

스튜디오드래곤 협력사 행동규범



- 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이하 ‘드래곤’)은 공정과 정직을 바탕으로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표 드라마 스튜디오로 지속성장하기 위해 행동강령인 <CJ 인의 약속>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드래곤은 사업 동반자로서 협력사와 상생하고 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협력사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CJ 인의 약속>에 터잡아 <협력사 행동규범> (이하 ‘본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 본 규범은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협력사의 적법하고 윤리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고양하며, 드래곤과 체결하는 제반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본 규범은 <CJ 인의 약속>이 정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동반 실천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드래곤 공급망 내의 모든 협력사에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 및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협력사는 본 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하위 협력사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본 규범은 드래곤의 정책 및 기준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사항은 드래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됩니다.
- 본 규범과 국내외 관련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때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I. 윤리경영

협력사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장 운영 및 사업의 영위에 있어 윤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국내 및 해외 현지의 제반 법률과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① 반부패

- 협력사는 드래곤을 포함한 모든 계약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관련자에게 또는 그 관련자로부터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 유·무 형의 재산상 이득 또는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 3자를 이용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거래 청렴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거래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위반자에게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반부패 관련 법규의 준수를 항상 실천해야 합니다.

② 재무투명성

- 협력사는 모든 사업 및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회계 장부를 비롯한 회사의 모든 재무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반 법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③ 공정거래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및 현지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자신의 거래 분야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제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협력사는 경쟁사의 가격, 제품, 판매 조건, 수익 또는 마진, 시장 점유율, 유통 방식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담합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 협정이나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④ 정보공개

- 협력사는 인사노무, 안전보건, 환경관리, 지배구조, 재무상태 등 경영활동 전반의 성과에 대한 정

보를 관련 법규 및 업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 표기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⑤ 지식재산권 및 비밀정보보호

- 협력사는 드래곤을 비롯한 거래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영업비밀 또는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은 내부 정보의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우발적인 정보 공개의 가능성도 회피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 등 투자행위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⑥ 개인정보보호

- 협력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취득하고 보유해야 하며, 기업경영 및 제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인(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등을 포함)의 개인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개인 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및 제 3 자 정보 제공 등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⑦ 글로벌 규제 및 제재 법령 준수

- 협력사는 자신의 사업 운영 및 사업적 거래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국내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공급 망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시행하는 수출입 통제, 거래 등 무역 제한, 통상 금지와 관련된 법적·경제적 제재를 포함하여 제반 관계 법령 및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드래곤이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신속히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II. 인권 및 노동

협력사는 국내외 법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① 자발적 근로

-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폭행, 협박, 감금 등 부당한 구속으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여하 한 형태의 강제노동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협력사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예외로 허용하지 않는 한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하며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거나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② 아동·미성년 근로자 보호

- 협력사는 어떠한 작업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되며, "아동"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각국의 정의 및 연령 기준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협력사는 고용이 가능한 나이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③ 근로시간 준수

- 협력사는 근로 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 법규에서 허용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임금 및 복리후생

- 협력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되는 모든 현지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 법규에 따라 정규 근로 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⑤ 인도적 대우

-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괴롭힘,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관련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고충처리 절차 포함) 및 발생시 조치 등과 관련한 제반 프로세스를 구비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⑥ 차별 금지

- 협력사는 채용, 승진, 보상, 배치, 복리후생, 교육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연령, 성별, 성적 지향,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협력사는 공정한 직무 관련 기준과 근로자의 능력에 기반해서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III. 보건 및 안전

협력사는 근로자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과 안전은 주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지역사회의 안전 보건까지도 항상 유념하여야 합니다.

① 안전한 근로환경

-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무 환경에 내재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방 조치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작업 환경 조성, 재해 예방 장비 구비, 보호구 제공, 설비의 안정성 확보, 안전한 작업 절차 마련, 지속적인 안전 훈련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협력사는 특히 임신부 및 미성년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적 배려 집단에 대해서는 유해 작업 근무를 줄이거나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작업 환경 내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통제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② 비상사태 대비

- 협력사는 자연재해, 감염병, 업무 현장 사고 등 비상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가 비상 상황과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산업 재해 및 직업성 질병

-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성 질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자유로운 보고를 장려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사고 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 활동을 취하고, 근로자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안전 보건 교육

- 협력사는 안전 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근로자가 산업 안전과 관련한 사소한 문제라도 언제든지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이슈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 안전보건 평가

-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드래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련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드래곤은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IV. 환경 보호

협력사는 사업장 내에서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지구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현 세대의 행동으로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지구 생태계의 풍요로움을 우리의 후손도 누릴 수 있도록 작업 과정에 있어 환경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① 환경 법규 준수

- 협력사는 위험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폐기물 등 환경 오염을 규제하는 제반 환경 법규 및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등 환경 관련 국제조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② 환경 인허가 및 보고

- 협력사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필수 환경 인허가 사항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항상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환경 오염 방지

- 협력사는 생산·정비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환경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배출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 처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④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V. 본 규범의 적용

본 규범은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드래곤의 공급망 원칙과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드래곤은 협력업체, 기타 사업 파트너와 함께 모범적 사례를 구축함으로써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① 협력관계 구축

- 드래곤은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사의 원칙 준수와 활동 전개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드래곤은 협력사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② 협력사 평가 및 협조

- 가. 드래곤 본 규범의 실천 성과와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협력사에 정기·비정기적인 평가 또는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항목 수립을 통해 필요한 평가 또는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 나. 협력사는 드래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실무 담당자 및 사업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 본 규범에 대한 협력사의 중대 위반사항이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 기한 내 개선·시정되지 않을 경우 드래곤과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본 규범의 적용

- 가. 본 규범의 적용은 드래곤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나. 협력사는 본 규범에 대한 협력사 내부 인식도 제고를 위해 본 규범의 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 협력사는 2차 협력사 및 그 하위의 협력사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관련 계약에 정해진 드래곤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라. 협력사는 드래곤의 사전 승인을 받은 2차 협력사 및 그 하위의 협력사에게 본 규범의 내용

및 거래 계약에 명시된 드래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마. 협력사는 드래곤과의 관련 계약 체결 시 별도의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서약서'를 협력사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24. 07. 15.〉

1.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2024 년 08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STUDIO
Dragon